

대법원 2008. 11. 27 선고 2008다66856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, 상고인 주식회사 ○○

서울 중구 ○○

대표이사 신○○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

담당변호사 우@원, 양◇표, 손●규, 우♣윤, 송성현, 성@석, 김♣영

피고, 피상고인 한국주택금융공사

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6-1

대표자 사장 임○○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

담당변호사 유▽일, 민◆식, 이♣형, 서×열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

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08.11.27.

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이홍훈 주 심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